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965
----------	---------

제안년월일 : 2021년 04월 26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유통주체간 경쟁을 통한 거래제도의 다양화와 거래방식의 공공성·투명성 및 공정성의 확대와 도매시장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도매법인 재지정 관련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함(안 제7조제3항).
- 경매사의 금지행위 규정 중 경매사의 확인이 불가능한 “원산지 표시 위반” 을 삭제함(안 제11조제1항제9호).
- 시장이 구축한 전자거래시스템의 도매법인 의무·사용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함(안 제14조제2항).

- 중도매인의 갱신허가 중 업무정지 기간을 “1개월 이상” 과 “3개월 이상” 으로 함(안 제21조제3항제2호·제3호).
-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 중 불공정거래 행위 품목 및 도매법인이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갖는 경우를 삭제하고,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반영되는 품목을 추가함(안 제38조제2항).
- 도매시장 시설사용 규제 항목 중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철폐하거나 타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를 삭제함(안 제61조제1항제10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중도매인이 출하자와 직접거래 할 수 있는 품목을” 을 “중도매인이 상장 외의 방법으로 출하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품목과 기간을 정한 농수산물을”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매법인의 상장거래 형식을” 을 “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법인” 이라 한다)의 상장거래의 형식을”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법인” 이라 한다)” 을 “도매법인” 으로 한다.

안 제3조제1항 단서 외의 본문 중 “건설 또는 관할하는 도매시장은” 을 “개설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 이라 한다)은” 으로 한다.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도매시장공판장에 대한 적용) 도매시장에 설치된 공판장(이하 “도매시장공판장” 이라 한다) 및 도매시장공판장의 중도매인·매매참가인·경매사·산지유통인 등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도매법인” 은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로 “중도매인·매매참가인·경매사·산지유통인 등” 은 “도매시장공판장의 중도매인·매매참가인·경매사·산지유통인 등” 으로

본다.

안 제5조제2항 중 “보험가입, 시설물 사용기준 준수, 위생·환경 유지, 경쟁 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개선 및 선도유지의 촉진, 물류개선, 등급표준화 검사·안전성 검사·원산지 표시 강화 등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거래관계자 권익향상을 위한 지정조건 또는 승인조건” 을 “보험가입 등 규칙으로 정하는 지정조건 또는 승인 조건” 으로 한다.

안 제7조제2항 중 “이 조제 제5조제2항의” 를 “제5조제2항의”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지정하지 않는 경우” 를 “도매법인을 재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법인을 재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77조제1항 및 법 제82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부진평가를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받은 경우
2. 법 제77조제1항 및 법 제82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재무건전성의 평가점수가 3회 이상 도매법인 평균점수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
3. 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정조건 또는 승인조건을 해당 지정기간 내 3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4. 해당 지정기간 내 법 제82조제2항제3호 및 제7호, 제8호, 제10호부터 제

12호까지, 제17호부터 제20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업무정지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5. 해당 지정기간 내 법 제82조제2항제22호 및 제24호 중 동일한 위반행위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6. 해당 지정기간 내 제4호 및 제5호 각 행정처분 근거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5회 이상 받은 경우

안 제11조제1항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9호로 한다.

안 제14조제1항 중 “시장은” 을 “도매법인은” 으로, “도매법인이 전자 거래를 행하는 경우” 를 “전자거래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으로 하며, “구축하도록 하여야 하며,” 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로 한다.

안 제14조제2항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을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로, “사용하여야 한다.” 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전자거래시스템을” 을 “제2항에 따라 전자거래 시스템을” 으로 한다.

안 제15조제2항 중 “보험가입, 시설물 사용기준 준수, 위생·환경 유지, 경쟁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개선 및 선도유지의 촉진, 물류개선, 등급표준화 검사·안전성 검사·원산지 표시

강화 등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거래관계자 권익향상을 위한” 을
“보험가입 등 규칙으로 정하는” 으로 한다.

안 제19조제3항 중 “보증금, 시설물 사용기준 준수, 위생·환경 유지, 경쟁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개선 및 선도유지의 촉진, 물류개선, 등급표준화 검사·안전성 검사·원산지 표시 강화 등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거래관계자 권익향상을 위한” 을
“보증금 등 규칙으로 정하는” 으로 한다.

안 제21조제3항제2호 중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다) 1개월에” 를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개월 이상에”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업무정지(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다)에” 를 “업무정지 3개월 이상에” 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안 제23조제1항 중 “인수·합병의 경우” 를 “인수·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으로 한다.

안 제31조제3항 중 “중도매인으로 하여금” 을 “중도매인에게” 로 한다.

안 제36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를 “제1항 단서에 따라” 로, “도매할” 을 “도매하는” 으로 한다.

안 제3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부류를 기준으로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
2. 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3. 도매법인의 집하 능력 부족으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품목
4. 산지 농협 또는 수협 등을 통해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반입되는 품목

안 제61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제10호로 한다.

안 제67조제3항 중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를 “소속 공무원 또는 공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검사의 목적·범위 및 기간과 검사직원의 소속·직위 및 성명을 통지하여야 한다.” 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의 단서에 따라 <u>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중도매인이 출하자와 직접거래할 수 있는 품목을 말한다.</u></p> <p>2. (생략)</p> <p>3. “기록상장”이란 중도매인이 실질적으로 집하기능을 수행하고 형식적으로 <u>도매법인의 상장거래 형식을 취하는 거래를 말한다.</u></p> <p>4. “허위거래”란 <u>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법인”이라 한다), 시장도매인, 직접거래 허가 중도매인이 출하자가 실제 출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출하하여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u></p> <p>제3조(도매시장의 관리 등) ①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의 단서에 따라 <u>중도매인이 시장 외의 방법으로 출하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품목과 기간을 정한 농수산물을 말한다.</u></p> <p>2. (개정안과 같음)</p> <p>3. “기록상장”이란 중도매인이 실질적으로 집하기능을 수행하고 형식적으로 <u>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법인”이라 한다)의 상장거래의 형식을 취하는 거래를 말한다.</u></p> <p>4. “허위거래”란 <u>도매법인, 시장도매인, 직접거래 허가 중도매인이 출하자가 실제 출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출하하여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u></p> <p>제3조(도매시장의 관리 등) ①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p>

조 례 안	수 정 안
<p>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건립 또는 관할하는 도매시장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설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 (생략)</p>	<p>② (개정안과 같음)</p>
<p>제4조(도매시장공판장에 대한 적용) ① 도매시장에 설치된 공판장(이하 “도매시장공판장”이라 한다) 및 도매시장공판장의 중도매인·매매참가인·경매사·산지유통인 등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p>	<p>제4조(도매시장공판장에 대한 적용) 도매시장에 설치된 공판장(이하 “도매시장공판장”이라 한다) 및 도매시장공판장의 중도매인·매매참가인·경매사·산지유통인 등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도매법인”은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로 “중도매인·매매참가인·경매사·산지유통인 등”은 “도매시장공판장의 중도매인·매매참가인·경매사·산지유통인 등”으로 본다.</p>
<p>② 제1항에 따라 “도매법인”은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로 “중도매인·매매참가인·경매사·산지유통인 등”은 “도매시장공판장의 중도매인·매매참가인·경매사·산지유통인 등”으로 준용한다.</p>	<p>〈삭 제〉</p>
<p>제5조(도매법인의 지정 등) ① (생략)</p>	<p>제5조(도매법인의 지정 등)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시장은 도매법인을 지정할 때에는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p>	<p>② 시장은 도매법인을 지정할 때에는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p>

조 례 안	수 정 안
<p>에 추가한 보험가입, 시설물 사용기준 준수, 위생·환경 유지, 경쟁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개선 및 선도유지의 촉진, 물류개선, 등급표준화 검사·안전성 검사·원산지 표시 강화 등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거래관계자 권익향상을 위한 지정조건 또는 승인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7조(도매법인의 재지정 등) ① (생략)</p> <p>② 시장은 도매법인의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 등의 지정조건 또는 승인조건과 이 조 제5조제2항의 지정조건 또는 승인조건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법인을 재지정할 수 없다.</p> <p>1. ~ 3. (생략)</p> <p>4. 해당 지정기간 내 법 제82조제2항제3호, 같은 조항 제7호, 제8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7호부터 제20호까지 중 각 호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업무정지(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p> <p>5. 해당 지정기간 내 법 제82조제2항제</p>	<p>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 규칙으로 정하는 지정조건 또는 승인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③ (개정안과 같음)</p> <p>제7조(도매법인의 재지정 등)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시장은 도매법인의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 등의 지정조건 또는 승인조건과 제5조제2항의 지정조건 또는 승인조건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법인을 재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p> <p>1. ~ 3. (개정안과 같음)</p> <p>4. 해당 지정기간 내 법 제82조제2항제3호 및 제7호, 제8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7호부터 제20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업무정지(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p> <p>5. 해당 지정기간 내 법 제82조제2항제</p>

조 례 안	수 정 안
<p>22호, 같은 조항 제24호 중 각 호 동일한 위반행위로 업무정지(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p> <p>6. 해당 지정기간 내 제4호, 제5호 각 행정처분 근거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업무정지(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5회 이상 받은 경우</p> <p>④ 시장은 제3항 각 호에 해당되어 재지정하지 않는 경우 공모절차를 통하여 신규 도매법인을 지정할 수 있다.</p>	<p>22호 및 제24호 중 동일한 위반행위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p> <p>6. 해당 지정기간 내 제4호 및 제5호 각 행정처분 근거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5회 이상 받은 경우</p> <p>④ 시장은 제3항 각 호에 해당되어 도매법인을 재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통하여 신규 도매법인을 지정할 수 있다.</p>
<p>제11조(경매사의 금지행위) ① (생략)</p> <p>1. ~ 8. (생략)</p> <p>9. <u>원산지 표시 위반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행위</u></p> <p>10. 그 밖에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p> <p>② (생략)</p>	<p>제11조(경매사의 금지행위) ① (개정안과 같음)</p> <p>1. ~ 8. (개정안과 같음)</p> <p>9. <삭제></p> <p>9. 그 밖에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p> <p>② (개정안과 같음)</p>
<p>제14조(전자거래 및 견본거래) ①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라 도매법인이 전자거래를 행하는 경우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도매법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할 수 있다.</p>	<p>제14조(전자거래 및 견본거래) ① 도매법인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라 전자거래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도매법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할 수 있다.</p>

조 례 안	수 정 안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전자거래시스템을 직접 구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매법인은 시장이 구축한 전자거래시스템을 <u>사용하여야 한다.</u></p> <p>③ (생략)</p> <p>④ 도매법인은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전자거래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u>전자거래시스템을</u> 직접 구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⑤ ~ ⑥ (생략)</p>	<p>② <u>시장은</u>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전자거래시스템을 직접 구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매법인은 시장이 구축한 전자거래시스템을 <u>사용하게 할 수 있다.</u></p> <p>③ (개정안과 같음)</p> <p>④ 도매법인은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전자거래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u>제2항에 따라 전자거래시스템을</u> 직접 구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⑤ ~ ⑥ (개정안과 같음)</p>
<p>제15조(시장도매인의 지정) ① (생략)</p> <p>② 시장은 시장도매인을 지정할 때에는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u>보험가입, 시설물 사용기준 준수, 위생·환경 유지, 경쟁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개선 및 선도유지의 촉진, 물류개선, 등급표준화 검사·안전성 검사·원산지 표시 강화 등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거래관계자 권익향상을 위한</u> 지정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15조(시장도매인의 지정)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시장은 시장도매인을 지정할 때에는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u>보험가입 등 규칙으로 정하는</u> 지정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③ (개정안과 같음)</p>
<p>제19조(허가·신고) ① ~ ② (생략)</p> <p>③ 시장은 중도매업을 허가할 때에는 최저 거래금액, 시설사용계약, <u>보증금, 시설</u></p>	<p>제19조(허가·신고) ① ~ 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시장은 중도매업을 허가할 때에는 최저 거래금액, 시설사용계약, <u>보증금 등</u></p>

조 례 안	수 정 안
<p><u>물 사용기준 준수, 위생·환경 유지, 경쟁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개선 및 선도유지의 촉진, 물류개선, 등급표준화 검사·안전성 검사·원산지 표시 강화 등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거래관계자 권익향상을 위한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다.</u></p>	<p><u>규칙으로 정하는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다.</u></p>
<p>④ ~ ⑧ (생략)</p>	<p>④ ~ ⑧ (개정안과 같음)</p>
<p>제21조(갱신허가) ① ~ ② (생략)</p>	<p>제21조(갱신허가) ① ~ 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매인의 갱신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매인의 갱신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생략)</p>	<p>1. (개정안과 같음)</p>
<p>2. 법 제82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업무정지(업무정지를 <u>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다</u>) 1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해당 허가기간 내에 5회 이상 받은 경우</p>	<p>2. 법 제82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업무정지(업무정지를 <u>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u>)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해당 허가기간 내에 5회 이상 받은 경우</p>
<p>3. 법 제82조제5항제2호부터 제10호 중 각 호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u>업무정지(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다)</u>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해당 허가기간 내에 5회 이상 받은 경우</p>	<p>3. 법 제82조제5항제2호부터 제10호 중 각 호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u>업무정지 3개월 이상에</u>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해당 허가기간 내에 5회 이상 받은 경우</p>
<p>4.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허가기간 내에 <u>최하위등급 평가를 3회 이상 받은 경우</u></p>	<p>4. <삭제></p>
<p>제23조(중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 결정)</p>	<p>제23조(중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 결정)</p>
<p>① 시장은 중도매인의 규모화 및 활성화</p>	<p>① 시장은 중도매인의 규모화 및 활성화</p>

조 례 안	수 정 안
<p>를 위하여 중도매인 간 <u>인수·합병의 경우</u> 시설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 우대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를 위하여 중도매인 간 <u>인수·합병을 하는 경우에는</u> 시설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 우대할 수 있다.</p> <p>② (개정안과 같음)</p>
<p>제31조(등급표준화 검사 및 조치) ① ~ ② (생략)</p> <p>③ 시장은 불량 출하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직접거래 허가 <u>중도매인으로 하여금</u>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제31조(등급표준화 검사 및 조치) ① ~ 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시장은 불량 출하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직접거래 허가 <u>중도매인에게</u>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제36조(도매법인의 거래) ① (생략)</p> <p>② <u>제1항에 따라</u> 매수하여 <u>도매할</u> 경우 도매법인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1. ~ 2. (생략)</p>	<p>제36조(도매법인의 거래)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u>제1항 단서에 따라</u> 매수하여 <u>도매하는</u> 경우 도매법인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1. ~ 2. (개정안과 같음)</p>
<p>제38조(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 지정)</p> <p>① (생략)</p> <p>② 제1항의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생략)</p> <p>3. <u>기록상장, 허위거래 등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이루어지는 품목</u></p> <p>4. <u>해당 도매시장에서 특정 도매법인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출하자 또는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u></p>	<p>제38조(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 지정)</p> <p>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제1항의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개정안과 같음)</p> <p>3. <u>도매법인의 집하 능력 부족으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품목</u></p> <p>4. <삭제></p>

조 례 안	수 정 안
<p><u>품목</u></p> <p>5. 그 밖에 <u>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품목</u></p> <p>③ (생략)</p> <p>제61조(시설사용의 규제 등) ① (생략)</p> <p>1. ~ 9. (생략)</p> <p>10. <u>시설현대화 사업 또는 도매시장 관리상 필요로 하여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타 용도로 전환하고자 할 때</u></p> <p>11. <u>법령, 조례 등에 근거한 시장의 지시 또는 조치명령 등을 위반하였을 때</u></p> <p>② ~ ⑤ (생략)</p> <p>제67조(보고, 검사 및 명령) ① ~ ② (생략)</p> <p>③ <u>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중도매인이 갖추어 두고 있는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u></p> <p>④ ~ ⑥ (생략)</p>	<p>4. <u>산지 농협 또는 수협 등을 통해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반입되는 품목</u></p> <p>③ (개정안과 같음)</p> <p>제61조(시설사용의 규제 등) ① (개정안과 같음)</p> <p>1. ~ 9. (개정안과 같음)</p> <p>10. <삭제></p> <p>10. <u>법령, 조례 등에 근거한 시장의 지시 또는 조치명령 등을 위반하였을 때</u></p> <p>② ~ ⑤ (개정안과 같음)</p> <p>제67조(보고, 검사 및 명령) ① ~ 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u>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중도매인이 갖추어 두고 있는 장부를 소속 공무원 또는 공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검사의 목적·범위 및 기간과 검사직원의 소속·직위 및 성명을 통지하여야 한다.</u></p> <p>④ ~ ⑥ (개정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개설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물관리, 경쟁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물류 개선, 유통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중도매인이 상장 외의 방법으로 출하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품목과 기간을 정한 농수산물을 말한다.
2. “직접거래 허가 중도매인”이란 시장으로부터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 품목의 거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기록상장”이란 중도매인이 실질적으로 집하기능을 수행하고 형식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법인" 이라 한다)의 상장거래의 형식을 취하는 거래를 말한다.

4. "허위거래"란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직접거래 허가 중도매인이 출하자가 실제 출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출하하여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매시장의 관리 등) ①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설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도매시장 정기 휴업일 및 영업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도매시장공판장에 대한 적용) 도매시장에 설치된 공판장(이하 "도매시장공판장"이라 한다) 및 도매시장공판장의 중도매인·매매참가인·경매사·산지유통인 등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도매법인"은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로 "중도매인·매매참가인·경매사·산지유통인 등"은 "도매시장공판장의 중도매인·매매참가인·경매사·산지유통인 등"으로 본다.

제2장 도매법인

제5조(도매법인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도매법인을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매법인을 지정할 때에는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 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 규칙으로 정하는 지정조건 또는 승인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도매법인의 자격요건, 지정절차, 심사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도매법인의 상한 수) ① 도매법인(도매시장공판장 및 법 제24조의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한다) 상한 수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도매법인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상한 수 범위에서 도매법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도매법인의 재지정 등) ① 지정기간 만료가 예정되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도매법인은 지정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매법인의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 등의 지정조건 또는 승인조건과 제5조제2항의 지정조건 또는 승인조건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법인을 재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77조제1항 및 법 제82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부진평가를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받은 경우

2. 법 제77조제1항 및 법 제82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재무건전성의 평가점수가 3회 이상 도매법인 평균점수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

3. 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정조건 또는 승인조건을 해당 지정기간 내 3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4. 해당 지정기간 내 법 제82조제2항제3호 및 제7호, 제8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7호부터 제20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업무정지(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5. 해당 지정기간 내 법 제82조제2항제22호 및 제24호 중 동일한 위반행위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6. 해당 지정기간 내 제4호 및 제5호 각 행정처분 근거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5회 이상 받은 경우
- ④ 시장은 제3항 각 호에 해당되어 도매법인을 재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통하여 신규 도매법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8조(도매법인 자본금 규모 등) ① 도매시장별 도매법인의 자본금 최소 규모는 별표 2과 같다.

② 도매시장공판장의 경우 소속된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자본 계정을 사용할 경우 제1항의 해당 부류별 자본금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도매법인의 거래보증금 납부 및 반환, 순자산액 비율, 최저거래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도매법인의 관리) ① 도매법인은 정관의 변경, 주주 및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강서 농산물도매시장·양재동 양곡도매시장 (이하 “가락동도매시장 등”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하 “공사사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야 하며 공사사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도매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도매법인의 휴·폐업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경매사 관리) ① 도매법인은 법 제27조에 따라 도매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갖춘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어야 한다.

② 도매법인은 경매사를 임명한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도매법인은 그 소속 경매사 중 법 제2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즉시 해당 경매사를 해임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경매사 신고사항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경매사의 금지행위) ① 경매사는 법 제74조제1항 및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우선순위의 결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
2. 농수산물의 가격평가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농수산물의 경락자의 결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
4. 출하자,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또는 구매자 등으로부터의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경매사를 공무원으로 보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행위)

5. 거래 참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를 경매, 입찰, 정가·수의매매에 참여시키거나 낙찰시키는 행위

6. 기록상장, 허위거래 등 부정한 거래행위

7. 비예약형 정가·수의매매를 예약형으로 기록하는 행위

8.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가·수의매매 시행지침을 위반하는 행위

9. 그 밖에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도매법인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매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도매법인의 시설사용면적 결정) ① 도매법인의 시설사용면적은 시설현대화 사업, 거래규모, 시설여건, 위생·환경유지, 경쟁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물류개선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유통환경 변화 등 필요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② 면적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장려금 등의 지급) ① 도매법인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하자 및 중도매인에게 각각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200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매법인은 도매시장 거래물품의 가격불균형 조정 및 출하자의 가격보전을 위하여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200의 범위에서 출하자에게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및 보전금은 해당

액을 위탁수수료에서 미리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전자거래 및 견본거래) ① 도매법인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라 전자거래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도매법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전자거래시스템을 직접 구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매법인은 시장이 구축한 전자거래시스템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③ 전자거래에 이용하는 전자문서는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른 표준 송품장·제37조의3에 따른 판매원표 및 제38조에 따른 표준정산서로 하며, 이를 전자적 코드로 표준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④ 도매법인은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전자거래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전자거래시스템을 직접 구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⑤ 도매법인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견본거래를 하려면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의 시설에 보관·저장 중인 농수산물을 대표할 수 있는 견본품을 경매장에 진열하고 거래하여야 한다.
- ⑥ 전자거래 및 견본거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시장도매인

- 제15조(시장도매인의 지정) ① 시장은 시장도매인을 법 제36조에 따라 부류별로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장도매인을 지정할 때에는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 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 규칙으로 정하는 지정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시장도매인의 자격요건, 지정절차, 심사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시장도매인의 상한 수) ① 시장도매인 상한 수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시장도매인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상한 수 범위에서 시장도매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시장도매인 자본금 규모 등) ① 도매시장별 시장도매인의 자본금의 최소 규모는 별표 2와 같다.

② 도매시장별 시장도매인의 최저거래금액, 거래보증금 납부, 순자산액 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준용) 시장도매인의 재지정, 시장도매인의 관리, 시설사용면적 결정에 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2조를 각각 준용하며, 이 경우 “도매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경우 근거 법·조례 조항은 법 제36조제2항 및 이 조례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제4장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제19조(허가 · 신고) 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부류별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중도매업 허가 유효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에 해당되는 분기 말일로 한다.

③ 시장은 중도매업을 허가할 때에는 최저 거래금액,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등 규칙으로 정하는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중도매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중도매인은 조합 또는 단체를 구성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중도매인이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사사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의 경우에는 도매법인을 경유하여야 한다.

⑦ 중도매업의 허가절차, 중도매인의 최저거래금액, 보증금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⑧ 중도매인, 중도매인 점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0조(중도매인의 상한 수) ① 도매시장별 중도매인의 상한 수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품목 특성에 따라 일정 품목만을 한정적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중도매인을 제1항의 상한 수와 별도로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법인인 중도매인(이하 “중도매법인”이라 한다) 수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상한 수 범위에서 중도매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갱신허가) ① 제19조제2항의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중도매인은 허가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갱신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갱신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매인의 갱신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82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업무정지(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해당 허가기간 내에 5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 제82조제5항제2호부터 제10호 중 각 호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업무정지 3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해당 허가기간 내에 5회 이상 받은 경우

제22조(보조거래참가자 운영) ① 중도매인은 중도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본인 또는 대표자를 대신하여 경매, 입찰, 정가·수의매매에 참여시키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조거래참가자가 소속 중도매인을 대리하여 행한 모든 업무상의 행위는 해당 중도매인에게 귀속된다.

③ 시장은 보조거래참가자가 다음 각 호를 위반한 경우 보조거래참가자의 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1. 점포 전대 및 중도매업 허가권 대여 등에 관여한 경우

2. 경매, 입찰, 정가·수의매매 거래 등에서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3. 시설물 사용기준 준수, 거래질서 유지, 위생·환경 준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4.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 ④ 시장은 중도매인의 보조거래참가자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중도매인에 대하여 보조거래참가자 신규 등록 제한 또는 등록 가능 인원 수 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보조거래참가자의 등록 및 철회 등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3조(중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 결정) ① 시장은 중도매인의 규모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도매인 간 인수·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 우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일정에 맞춰 중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 배치를 위한 중도매인 평가결과 또는 추천을 통해 재배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도매인 평가 및 추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4조(준용) 중도매법인의 관리에 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법인“은 “중도매법인“으로 본다.

제25조(매매참가인 신고 및 관리) ① 법 제25조의3에 따라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매매참가인은 농수산물의 실수요자로서 도매시장 안에서 판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매매참가인의 신고 및 철회, 거래참가 제한 등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6조(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 ①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에서 거래에 참가하려면 도매법인과 미리 거래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매매참가인의 보조거래참가자 운영에 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으로 본다.

제5장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 등

제27조(산지유통인 등록 등) 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산지유통인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② 도매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다른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거나 취소를 하고, 그 명단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의 효력은 시장이 행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④ 시장은 산지유통인으로 등록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에 도매시장 내에서 판매·매수 또는 중개 업무를 한 경우

2. 그 밖에 관련법령 등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⑤ 시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산지유통인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의 출입을 금지·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산지유통인 등록신청 및 등록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8조(산지유통인 등록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산지유통인 등록을 예외로 할 수 있다.

1.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2. 종합유통센터·수출업자 등이 잔품을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3. 도매법인이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한 농수산물을 상장하는 경우
4. 중도매인이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을 매매하는 경우
5. 법 제34조에 따라 도매법인이 다른 도매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6. 법 제34조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도매법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7. 시장도매인이 법 제37조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제29조(출하자 신고)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출하를 하려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출하자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출하예약 우대 조치) 시장,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직접거래 허가

중도매인은 제27조에 따른 산지유통인 등록 또는 제29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를 한 자가 출하예약을 하고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 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등급표준화 검사 및 조치) ① 시장,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직접 거래 허가 중도매인은 속박이·수량·중량 등 품질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등급표준화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급표준화 검사 결과 불량 출하자에 대해서는 도매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의, 경고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불량 출하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직접 거래 허가 중도매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2조(수탁거부 등) ① 법 제38조 및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직접거래 허가 중도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하된 농수산물의 수탁을 거부·기피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거래 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2. 법 제30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3. 법 제38조의2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 시장이 정하는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5. 그 밖에 환경 개선 및 규격출하 촉진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품목에 대하여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직접거래 허가 중도매인에게 수탁을 거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33조(구매자신고) ① 시장은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려는 자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구매자의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구매자신고 우대 조치) 시장은 구매신고자에 대하여 주차 우대, 전용 주차공간 지정, 정기적 시장정보 제공 등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5조(미신고 구매자 제재) 시장은 농수산물 거래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미신고 구매자에 대하여는 도매시장의 출입금지 또는 주차료 감면 제외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장 매매 및 대금결제 방법 등

제36조(도매법인의 거래) ① 도매법인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도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하여 도매하는 경우 도매법인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매수하여 도매한 물품의 품목·수량·원산지·매수가격·판매가격 및

출하자

2. 매수하여 도매한 사유

제37조(매매방법) ① 도매법인은 법 제32조에 따라 도매시장에서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은 농수산물을 경매, 입찰, 정가·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출자가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② 도매법인은 경매, 입찰, 정가·수의매매 거래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수하여 도매를 하는 행위
2. 법 제3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상장된 농수산물을 수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지 않은 행위
3. 법 제33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출자가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농수산물을 출자의 승낙 없이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는 행위
4.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지정된 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5.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 대우를 하는 행위
6. 법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매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위반하거나 시장이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
7.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

③ 시장도매인, 직접거래 허가 중도매인이 매수, 위탁 또는 중개를 할 때에는 출자와 협의하여 송품장에 기재한 거래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④ 경매, 입찰, 정가·수의매매 방법 및 절차, 품목별 경매시각 및 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 지정) ① 시장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을 거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관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매시장별로 지정한다.

② 제1항의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부류를 기준으로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
2. 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3. 도매법인의 집하 능력 부족으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품목
4. 산지 농협 또는 수협 등을 통해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반입되는 품목

③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 지정 및 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거래정보 보고 등) ① 시장은 도매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경영상태에 대한 정보를 출하자에게 알리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매법인은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월별 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을, 대금정산조직은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직접거래 허가 중도매인의 월별 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 등을 매매방법별로 종합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보고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 등 거래정보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0조(거래 참가거부 및 담합금지 등) ① 도매법인은 중도매인 및 매매

참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경매 등 거래 참가를 거부해서는 아니되고 거래 참가 시에는 차별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예치한 보증금 또는 담보 이상으로 거래 한도를 초과하는 자
 2. 업무정지 중인 자
 3. 고의로 미수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
- ② 중도매인은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 등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담합하여 도매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및 가격형성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의 납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거래참여자간의 담합이나 그 밖에 부정행위 등 공정한 거래질서 및 가격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재경매 또는 재입찰 등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 관리구역 인접 지역에서 부정행위 등 공정한 거래질서 및 가격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중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2조(불법행위고발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정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불법행위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불법행위고발센터는 도매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와 도매시장의 이용에 관한 불편사항 등을 접수·처리한다.

③ 불법행위고발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3조(거래특례) ①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도매법인이 중도매인

· 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이 도매법인·중도매인에게 각각 판매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대상 도매법인·시장도매인, 기간 및 품목을 지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매법인이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이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이 도매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각각 판매를 한 때에는 판매결과 보고서를 판매 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강서농산물도매시장 운영 특례)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은

서울특별시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7조와 다른 내용의 특례를 정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 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판매원표 등 관리)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판매원표, 표준송품장,

표준정산서의 작성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대금정산조직의 운영방법 및 관리 등) ① 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호에

따라 시장은 대금정산조직의 대표자에게 대금결제 내역 또는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직접거래 허가 중도매인의 예치자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직접거래 허가 중도매인이 대금결제

능력을 상실하여 출하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탁 또는 매수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대금정산조직의 형식, 운영, 관리 및 대금결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도매업무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도매법인이 판매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거나 공사, 다른 도매법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매업무 대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8조(하역업무)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하역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하역체제의 개선 및 하역의 기계화 촉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하역비의 절감으로 출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물류체계 구축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는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및 직접거래 허가 중도매인이 전액 부담한다.

③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및 직접거래 허가 중도매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농수산물의 하역비를 부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도매시장의 하역기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직접거래 허가 중도매인, 하역 전문업체 등에게 하역장비의 확보 및 운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하역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9조(출하자 손실보전금) ① 시장은 도매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전년도 위탁수수료 수입의 1000분의 3 이상의 금액을 별도로 적립하게 할 수 있다.

② 도매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른 출하자 손실보전금(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별도 계좌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출하자 손실보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도매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보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달 말일까지 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 보전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관계인의 영업제한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도매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은 해당 도매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도매인은 중도매업이 허가된 도매시장 이외의 장소에서 도매시장 거래물품을 중개 또는 판매하거나 공정한 거래형성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51조(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① 시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의한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 및 속성검사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 및 속성 검사를 포함한다) 업무를 공사사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속성검사 결과 잔류농약이 양성반응으로 판정된

농수산물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38조의2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및 조치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농수산물을 출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최근 1년 이내에 1회 적발 시 : 1개월
2. 최근 1년 이내에 2회 적발 시 : 3개월
3. 최근 1년 이내에 3회 적발 시 : 6개월

⑤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은 제4항에 따라 도매시장 출하제한을 받은 출하자의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법 제38조제3호에 따라 출하제한 기간 동안 수탁 또는 매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결과 기준미달로 판명된 해당 농수산물에 대한 회수·폐기를 위하여 시장이 거래정보를 요구할 경우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은 거래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료 수거 및 폐기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도매시장에 식품위생감시원 자격을 가진 사람을 파견 할 수 있다.

제52조(반입물품의 제한 등) ①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 도매시장 이용자는 도매시장에 반입된 물품 중 위생상 위해하다고 인정되거나 법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금지된 물품에 대하여는 판매·수탁 등 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반입·유통되는 물품이

식품위생상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출하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출하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3조(거래단위) 도매시장에서 거래단위는 중량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중량단위로 거래하기가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는 거래관습에 따라 적당한 단위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거래관계자의 표지) ① 도매시장에서의 매매에 참가하는 경매사,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거래참가증과 일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하는 자는 경매, 입찰, 정가·수의매매에 참여할 수 없다.

제55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징수 및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등

제56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78조 및 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도매시장 업무 부서장, 공사 유통관리업무 총괄 부서장(본부장 등)
2. 유통인대표(도매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 등), 하역단체 대표 등 8명

이내

3. 생산자단체 및 구매자단체 대표 등 5명 이내

4. 시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 등 5명 이내

5. 그 밖에 농수산물 유통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2. 수수료, 시장 사용료, 하역비 등 각종 비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향상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5. 정가·수의매매 거래, 거래의 특례 적용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6. 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의 결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의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매시장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57조(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78조의2 및 법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 농수산물의 거래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1. 낙찰자 결정에 관한 분쟁
2.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3.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③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장 도매시장 시설 등

제59조(도매시장 시설사용 등)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도매시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시장의 지시 또는 조치명령 등을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게 도매시장의 출입, 시장 시설의 이용, 물품의 반·출입 및 도매시장 안에서의 운반 등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60조(시설의 전대금지 등) ①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의 시설사용자는 그 사용을 승인 받거나 계약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의 승인 없이 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중도매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시장은 중도매인 점포 전차인 등에 대하여 보조거래참가자 등록 철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 사용기준 등 도매시장 시설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1조(시설사용의 규제 등) ① 시장은 도매시장 시설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을 제한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화재 등 재해의 예방, 교통의 정리 또는 시민 보건위생상 필요할 때
2. 불공정 거래, 환경저해, 공용시설 무단 점용 등 도매시장 질서를 해칠 때
3.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였을 때
4.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 도매시장의 여건변경으로 시설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시설을 철거하고자 할 때
5.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 하였을 때
6. 사용료, 임대료, 관리비 등을 3회 이상 체납하였을 때
7.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이를 허용한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 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8.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
9. 도매법인, 시장도매인의 지정취소 또는 중도매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업하였을 때
10. 법령, 조례 등에 근거한 시장의 지시 또는 조치명령 등을 위반하였을 때

②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의 도매시장 시설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도매시장 시설을 신축, 증축, 철거하거나 그 형태를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도매시장 시설사용자가 사망, 법인의 해산, 폐업, 지정·허가의 취소, 해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상속인, 청산인, 대리인 또는 본인은 시장이 개별적으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하역단체 노동자 사무실 또는 대기실 등의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⑤ 시설사용의 규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2조(대집행 및 보수명령) ① 시설사용자가 제63조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시설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사용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시설사용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63조(위생·환경유지) ①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 도매시장 시설사용자는 법령, 조례 등에 따른 시장의 지시 또는 조치명령 등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유지·개선할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보건위생상 또는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유지 및 정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환경을 저해한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구매자 등 누구에게나 시설물 사용제한,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4조(재해시의 물품확보) 시장은 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물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물품의 확보가 필요한 때에는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65조(처분제한) 도매시장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은 그 개설허가가 취소(이전 또는 폐업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가 아니면 도매시장으로 사용할 이외의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하지 못한다.

제66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중도매인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중도매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 평가내용, 평가기준 및 조치계획 등을 사전에 정하여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77조에 따라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및 중도매인에 대하여 사용 시설의 면적·위치 조정 및 차등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공고,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출하자 등 도매시장의 이용자에게 알릴 수 있다.

제9장 보 칙

제67조(보고, 검사 및 명령)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 등에 대하여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중도매인, 산지유통인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

장의 개설자, 중도매인이 갖추어 두고 있는 장부를 소속 공무원 또는 공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검사의 목적·범위 및 기간과 검사직원의 소속·직위 및 성명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중도매인은 제3항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검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시장은 농수산물의 가격 및 수급 안정, 거래질서의 유지 또는 생산자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및 그 밖의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개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중도매인은 제5항에 따른 시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8조(권한의 위탁) 법 제21조 및 제85조제2항 등에 따라 가락동도매시장 등에 관한 시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공사사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거래품목의 지정
2. 제5조에 따른 도매법인의 지정
3. 제6조에 따른 도매법인 상한 수
4. 제7조에 따른 도매법인의 재지정
5. 제8조에 따른 도매법인의 자본금 규모
6.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매법인의 관리
7. 제9조제3항에 따른 도매법인의 휴·폐업 신고
8. 제15조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지정
9. 제16조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상한 수
10.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자본금 규모

11. 제17조제2항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최저거래금액 기준
12. 제18조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재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3. 제19조에 따른 중도매업 허가 및 중도매인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관한 사항
14. 제20조에 따른 중도매인 상한 수
15. 제24조 따른 중도매법인의 관리
16. 제38조에 따른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의 지정
17. 제62조에 따른 대집행에 관한 사항
18.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중 위반자에 대한 주의
 - 경고를 제외한 행정처분

제6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